

2023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단, 시험일정은 코로나19 추이 등에 따라 다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해당사항은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2022. 12. 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1.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시험직종	응시자격
간호조무사	「의료법」 제8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 법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학과교육 이수중이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습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시험일 이전까지 학과교육 및 실습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습과정의 경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2023년도 하반기 국가시험까지 시험에 응시한 이후 시험일로부터 1년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6개월 이내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 의료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학과교육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인정합니다.

* 응시자격 관련 법률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 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결격사유 등

시험직종	결격사유	응시자격 제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의료법」제8조	「의료법」 제10조
간호조무사	<p>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 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p>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p> <p>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p>

시험직종	결격사유	응시자격 제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의료법」제8조	「의료법」 제10조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유의사항

- 국가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간호조무사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일정

구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응시수수료	시험일	합격자 발표 예정일시	시험장소 공고일 (국시원 홈페이지 공고)
상반기	인터넷: 2023. 1. 3.(화)~ 1. 10.(화)	37,000원	2023. 3. 11.(토)	2023. 3. 28.(화) 10:00	2023. 2. 8.(수)
하반기	인터넷: 2023. 7. 4.(화)~ 7. 11.(화)	37,000원	2023. 9. 9.(토)	2023. 9. 26.(화) 10:00	2023. 8. 9.(수)

3. 시험장소(응시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도별 시험지역은 응시원서 접수 시 안내 예정)

※ 응시원서 접수 시 시험장소(응시지역) 선택은 응시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교육기관 소재지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등

구분	인터넷 접수	방문 접수 (국시원에 방문하여 인터넷 접수)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09:30부터 18:00까지 (접수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ww.kuksiwon.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

구분	인터넷 접수	방문 접수 (국시원에 방문하여 인터넷 접수)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계좌이체 •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간편결제 • 가상계좌 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 단,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감면 자격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수료 감면대상자는 결제 진행 과정에서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응시수수료 전액 감면 <p>※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p>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파일 : 276×354픽셀 이상 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cm×4.5cm, 200dpi 이상 크기 ※ 증명사진을 스캔하실 때는 해상도 최소 200dpi설정(600dpi 이상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1매 (3.5×4.5cm)

*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는 다음의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 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주의사항
1. 자격증사본 1매 2. 이수증명서 1매 3. 성적증명서 1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수한 교육기관이 속한 국가의 외교 관할 행정기관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의 경우, 현지 주재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 단,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공증을 생략할 수 있음
4.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수한 교육기관의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함
5. 사진 2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권용 크기(3.5×4.5 cm)의 동일한 사진 2매 •인화지로 출력한 원본만 가능(스캔 후 일반종이 출력물은 불가)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매	

- 외국학교 등 인정심사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인정(확인)된 자 및 기 응시경력자 중 이전에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없이 인터넷 접수(회원가입-로그인-마이페이지-과거 시험 정보찾기-실명인증-로그인)가 가능합니다.
- 제출했던 서류는 5년(서류보존 기간)이내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의 주소지는 현재 거주지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
- 나.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 접수기간 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별관 고객지원센터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 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시원을 방문하여 필수서류 확인 후 접수하여야 하며, 이미 서류를 제출하여 응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 라.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및 응시 자격 결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마.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취소신청]에서 로그인 및 본인확인 후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 하여 등록하시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바. 시험장 선택제를 시행하며 <별첨1>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험장 선택제 운영 방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 시험장소 변경은 다음과 같이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 또는 전자우편 신청은 불가합니다.

구분	신청방법(인터넷)
○ 타 지역으로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장소 공고 7일 전까지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변경 응시표 출력일 이후 시험시행일 5일 전까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지역(시험장)변경]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
○ 동일지역 내에서의 시험장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표 출력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응시지역(시험장)변경]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

* 희망 응시지역 내 시험장 또는 희망 시험장에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변경 가능

- 아. 장애인 및 질병, 사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시험 20일 전까지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단, 점자 또는 음성지원컴퓨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 30일 전까지 편의지원 신청해야 함),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편의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는 응시자에게는 응시수수료를 전액 감면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응시수수료 결제 시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전액 감면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내에 별도 신청을 통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기간: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마감일 이후 7일까지

6. 시험시간표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응시자 입실시간	시험시간	배점	시험방법
1교시	1. 기초간호학 개요 [35] (치의학기초개론 및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2. 보건간호학 개요 [15] 3. 공중보건학개론 [20] 4. 실기 [30]	09:30	10:00~11:40 (100분)	1점 /1문제	객관식 (5지 선다형)

* 동 시간표상의 각 교시별 과목 순서에 따라 문항 순서 배열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서 법률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는 시험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기준으로 출제됩니다.

7. 합격자 결정방법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 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험문제 및 정답은 응시자를 대상으로 공개합니다.
- 시험문제 및 가답안의 공개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일로부터 5일간 공개하며, 일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은 시험문제지의 ‘응시자 안내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최종 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이후 제기되는 의견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나.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응시자는 시험일 오전 09:3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 시험시작 타종이 울리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시험장의 경우 시험시작 2시간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 준비물: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함)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의 범위: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만료일 이내),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청소년증(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모바일 신분증은 불인정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행본부에서 응시번호만 확인된 경우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마. 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필기 도구(연필, 적색펜 등)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답안카드는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채점합니다.

- 답안카드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연필, 적색펜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색깔과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카드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으므로 필히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합니다.

- 답안카드는 구기거나 이물질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 답안카드에는 시험직종,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정답 외에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별첨4'의 답안카드 견본은 참고용이며,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카드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희망할 경우 답안카드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정테이프는 응시자가 요구 시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며,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 테이프도 사용 가능합니다.

-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어야 하며,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사. 답안카드에 시험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 중에는 어떠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시계, 스마트밴드, (스마트)이어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차. 시험실에 시계가 있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 통신 등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시계 등)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카. 시험종료 타종 후에도 답안카드를 계속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교시 성적을 '0점' 처리합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시간에는 답안카드 작성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잘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 타.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파. 시험실내 응시자 개인물품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응시자는 개인물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544-4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부정행위 및 응시자 준수사항

- 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의료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의거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시험의 응시가 3회의 범위에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자의 기준

'부정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2.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실기작품 및 그 제작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제지(시험기기를 포함한다)를 보고 자신의 답안카드(실기작품 및 시험기기로 작성하는 답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제작)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5.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6. 다른 응시자와 답안카드를 교환하는 행위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카드를 제출하는 행위
8. 시험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
(단, 문제지를 공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
9. 시험 전·후 또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 답안 등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 가.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 나. 홈페이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게재 및 공유
 - 다.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인쇄물
 - 라. 강의, 설명회, 학술모임
 - 마. 기타 정보전달 방법
10. 시험 중 시험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11.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12.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3. 시행본부 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4. 컴퓨터시험 중 시험기기를 외부 유출 또는 시험 종료 후 제출하지 않는 행위
1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부정 행위자 등 처리 지침」 등에 의거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합니다.

응시자 준수사항의 기준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행위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행위
3. 시험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행위
4.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5.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부정행위자의 기준 제10호 물품 제외)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지품을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6.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한 행위
7. 실기시험 시행 중에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낙서, 그림, 메모 등의 형태로 종이 등에 적거나 신체에 기록하는 행위
8. 그 밖에 원장이 정한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

10.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련 응시자 협조사항

*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확진자 등 시험 안내) <별첨2>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 시행방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시험장 입장) 시험당일 시험장 입장은 08:20부터 가능합니다. 발열, 건강상태 체크 등 본부직원 확인없이 입장이 불가하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자가문진표를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정보-서식모음]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시험장 입장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생활속 거리두기) 시험장 입·퇴장, 화장실 이용 등 이동 시 주변사람과 1.5m정도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응시자간 접촉 및 대화는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손소독제 사용) 시험장 입장, 화장실 이용 등 시험실 출입 시 마다 반드시 손소독제를 사용해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 (마스크 착용) 시험시작 후 감독관의 응시자 신원확인 시를 제외한 시험장 이용 중 (시험장 입장 시부터 시험종료 후 퇴장 시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거부 시에는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바. (창문개방) 시험장의 원활한 환기를 위해 시험 중 창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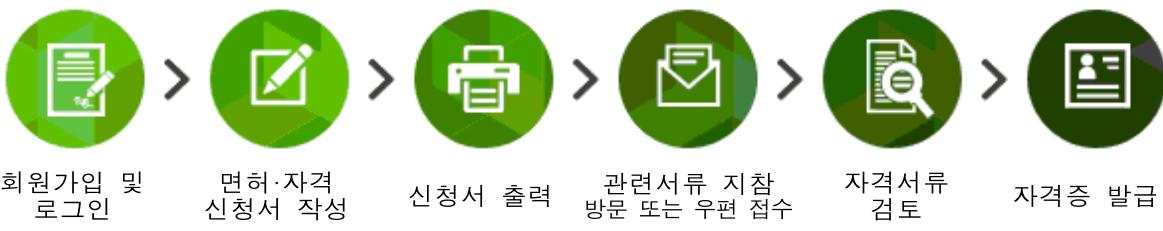
11.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신청

가. 합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www.kuksiwon.or.kr)
- 휴대폰 문자(SMS) 통보(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폰 연락처 기재 자에 한함)

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여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신청절차: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접속 → [회원가입] → [면허·자격증명서] →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 메뉴 클릭 후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1. 대상자 전원 공통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1부.
2. 대상자별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관련학과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1부. ※ 「의료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학력이상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1부. •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1부. ※ 「의료법」 제8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시설의 간호관련학과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1부. ※ 「의료법」 제8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1부. •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1부. ※ 「의료법」 제8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의료법」 제80조제1항제6호 중 「의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학을 전공한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의료법」 제80조제1항제6호 중 「의료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간호학을 전공한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졸업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외국학교 등을 졸업하고 외국의 면허(자격)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는 증명서, 면허(자격)증 등에 대하여 졸업학교 등이 속한 국가의 외교 관할 행정기관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현지 주재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단,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우리말로 번역공증을 생략할 수 있음)

- 다. 답안카드는 채점관리시스템에 의해 전산채점 처리됩니다.
- 라. 본인의 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마.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응시결격 사유 및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 바. 본인의 답안카드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답안카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희망일 1일 전 18시까지 [국시원 홈페이지-면허·자격·증명서-답안카드 열람 방문신청]을 통해 예약하고, 회신을 받은 후 열람일정을 확정하도록 합니다.
 - 답안카드 열람 일정을 확정한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시원(별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답안카드 열람신청서'를 작성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복사, 사진촬영, 메일 전송 등은 불가합니다.

마침